

정 관

2023. 07

동서페더럴모굴주식회사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회사의 상호는 동서페더럴모굴주식회사라 칭하며 영어명은 DONGSUH FEDERAL-MOGUL COMPANY LIMITED.로 한다.

제 2 조 (목 적)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
2. 주물제조 및 판매업
3. 상품 및 제품 수출입업
4. 자동차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
5. 항공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6. 태양광 발전사업
7. 부동산 임대업
8.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기타 연관사업

제 3 조 (본사 및 지사)

회사는 본사를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소재에 두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한국내 또는 외국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공 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suhfm.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제 5 조 (수권주식)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176만주로 하며, 1주당 액면가는 금 5천 원으로 한다. 수권 주식수는 이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승인을 거쳐 증가할 수 있다.

제 2 장 주 식

제 6 조 (발행주식)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42,000주로 한다.

제 7 조 (주 권)

회사의 주권은 기명식 등록식 주권으로 하고,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등 5종류로 구분한다.

회사의 주권에는 번호를 기록하고 주권에 해당되는 주식수와 주권 소유자를 명시하고 발행 시에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한다,

제 8 조 (주식에 대한 납입)

회사 설립시 발행될 총주식은 그 액면가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회사에 납입하므로서 발행된다.

제 9 조 (질권의 등록)

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을 등록하려고 하는 주주는 해당주권을 첨부하여 회사 소정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은 준질권 또는 질권 이전의 등록과 질권 등록의 취소에서 준용하여 적용된다.

제 10 조 (주권의 재발행)

새로운 주권을 교부 받기를 원하는 주주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소정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또는 손상을 입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판결 정본 또는 등본
2. 주식의 분할, 합병 또는 오손된 주권의 교환을 원할 경우 취소될 주권

제 11 조 (주소의 신고)

모든 주주, 질권자 및 동대리인은 그들의 성명, 직책, 주소 및 인감을 회사 소정양식에 따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회사에 법적으로 충분한 대리인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응하지 않으므로서 야기되는 여하한 손실에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수수료)

회사는 제 9조 및 제 10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 정지)

회사는 사업년도 말일 익일로부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자에 이르는 기간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이 규정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그 기간은 각 주주에게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동 총회 종료일자에 이르는 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기재사항 변경)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원하는 자는 회사 소정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의 양도는 양수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정보가 주주명부에 적절하게 기입되기 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개서를 원하는 자는 본 의사 소정의 신청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합병, 주식의 경매 기타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원인을 입증할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신주식의 선매권)

1) 주주는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이 발행되기 직전에 지분비례로 청약할 선매권을 갖는다.

어떤 주주가 선매권 행사를 원하지 않거나 신주를 인수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주주는 일차로 기타 주주에게 서면으로 비례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의 권리를 양도할 표시를 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다른 주주가 그 양도표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는 법인 허용하는 선매권의 처리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제 16 조 (저당과 주식의 매각)

1. 회사의 주주는 정관에 별도 정하는 경우 또는 방계회사가 아니고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저당할 수도 없다.

방계회사란 당해 주주가 지배하거나 주주를 지배하거나 공동 경영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공동경영이란 회사가 동일인의 회사를 갖고 있거나 회사가 과반수의 이사를 지배하는 경우로 본다.

주주가 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직접, 간접으로 소유할 경우 그 주주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주주는 소유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기 조건에 의거 방계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 양도, 질권설정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주주가 보유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때는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조건하에 타 주주들에게 동일한 가격 및 조건으로 일차적으로 동 주식의 매입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매입권을 소유한 주식은 매입권 행사에 관한 서면통보를 접한 60일 이내에 매도인측에 문서로 매입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 주식대로 의사 통보에는 가격 및 제 조건과 원매자의 주소 성명을 포함하는 모든 세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타주주가 매입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매입권 행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매입을 완결하여야 한다.

외국인 주주에 의한 주식의 매입은 주식 매입에 관한 한국정부 당국의 승인획득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회사내에서 본 항에 규정된 매입권 행사에 한 번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후일 매입권 발효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주주는 소유 주식을 제 16조 규정에 따라 원매입에게 매도, 양도, 저당 또는 질권 설정하고자 할 때는 동 주주는 매입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원매입으로 하여금 각 주주와 회사에 공히 AEI와 유성기업주식회사간에 1984년 5월 24일자로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의 제 조항을 동 원매인이 동 합작투자계약의 본래의 당사자와 동일한 정도와 효력으로 준수하겠다는 확약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주권과 주식청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배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 주권 표시 주식은 1984년 5월 24일자로 AE PLC와 유성기업주식회사간에 체결되어 회사 본점에 보관한 합작투자계약의 제조항에 따른다”
5.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17 조 (종 류)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는 하더라도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사의 표결권의 1/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일인 또는 다수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 18 조 (통 고)

1. 회사의 매 주주총회에 관한 서면통고는 한국어 및 영어로 총회 소집의 목적장소와 일시를 명시하여 회장에 의해 또는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에 의해 한국인 주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그리고 비한국인 주주에게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 늦어도 21일 전 전보 또는 데렉스로 그리고 추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 대해 모든 주주의 서면동의(전보나 테렉스를 포함)를 얻었을 경우 주주총회는 상기와 같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개최할 수 있다.

2.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총회는 본사에서 개최토록 하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국내 또는 외국의 기타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 (표결수)

각 주주는 표결권이 있는 각 주당 1표의 표결권을 갖는다
회사의 보통주 1주는 1표의 표결권을 갖는다.

제 20 조 (대리표결)

주주는 각종 총회에서 본인 자신 또는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대리인은 총회 이전에 그의 대표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주주총회는 본인 자신이 출석했거나 대리인에 의해 대표되든지 간에 주식 소유자를 대표하는 주수의 과반수 표결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정회할 수 있으나 다른 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

제 21 조 (의결의 방법)

1. 본 제 21조 조항이나 대한민국 상법의 강제규정 혹은 본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최소한 2/3를 소유한 주주가 참석했거나 대리권에 의해 대표된 주주총회에서 과반수의 표결로 의결한다.
2. 다음 사항은 주주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사항에 관련된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소한 2/3를 소유한 주주의 찬성투표를 요한다.
 - 1) 회사 정관 또는 사규의 개정
 - 2) 제 2조에 규정된 분야를 초월한 회사 영업활동 범위의 확대
 - 3) 수권 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
 - 4) 회사의 부동산 및 동산의 저당 및 담보
단, 당해 부동산의 66.⅔%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취득하는 구입금액상당의 저당은 제외한다.
 - 5) 배당 및 배당금의 공표
 - 6) ① 자산의 매각
② 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총계 미화 50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차입, 대부, 선불금 및 보증
 - 7) 회사와 타회사와의 또는 타회사로의 합병통합 및 청산
 - 8) 회사의 폐쇄, 설립허가의 양도 또는 법인존립의 종결

9) 기타 대한민국 상법이 주식총회에서 주주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제 22 조 (주주총회의 의장)

회장은 모든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사의 유고시는 사장이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3 조 (총회 의사록)

1.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의사진행을 한국어와 영어로 기록한다.
2. 의사록에는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요지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참석이사는 의사록에 성명을 기입 서명 날인하여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제 24 조 (이사의 인원수 및 선임)

1. 회사에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2. 이사는 회사 발행주식의 2/3이상 참석하거나 대리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본인 또는 대리 참석 주주의 과반수 투표로서 선임한다.
이 시기에 지명된 사람은 다른 회사의 사원이거나 이사이거나 주주라는 이유로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3. 이사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며 어느 주주의 지명인이거나 또는 회사와 동 주주간에 사업상 재정상 또는 기타 관련에 개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4. 이사는 한국내의 거주자이거나 회사의 주주일 필요는 없다.

제 25 조 (임 기)

1.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6 조 (결 원)

이사직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원 발생후 조속한 시일내에 소집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 24조 규정에 따라 후임이사를 선임한다.

이러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후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7 조 (이사의 직무)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모든 이사로서 구성된다.

본 정관 대한민국 상법 및 주주총회에서 채택된 의결사항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및 역원이 집행한 회사의 권리를 감독한다.

특히 하기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1. 연간 예산의 채택
2. 회사 제품의 판매할인
3. 미화 25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계약 협정 채무
혹은 보증
4. 미화 2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대부의 보증 및 기타 개인과의 거래의 추인
이것은 회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에 한하여 정관 제 21조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주주의 승인을 요한다.
5. 본 정관 제 21조 규정에 따르는 토지, 건물, 공장 자산의 취득의 처분
이에 관해서는 주주의 승인을 요한다.

제 28 조 (대표이사)

회사는 3명의 대표이사를 두고 이사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각각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수시로 내리는 지시나 제한을 받으며 회사의 이익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간주되는 통상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 29 조 (회 장)

이사회는 이사중에서 회장을 선임하고 회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제 30 조 (사장, 부사장)

1. 이사회는 이사중에서 회사의 사장 및 부사장을 선임하며,
사장 및 부사장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다.

제 31 조 (감사의 인원수 및 선임)

1. 회사는 1명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직에 지명된 사람은 그가 다른 회사의 감사이거나 역원, 이사인 이유로 자격을 상실
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임 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3 조 (결 원)

본 정관 제 26조의 전단 규정은 감사의 결원을 보충하는데도 등등하게 적용된다.

제 34 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하거나, 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경우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5 조 (보 수)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제 36 조 (퇴 입)

이사 및 감사직은 다음의 경우 퇴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사직서가 이사회에서 수락되었을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았을 경우
4. 최종 판결로 금고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5. 사망하였을 경우

제 5 장 이 사 회

제 37 조 (소 집)

1. 이사회는 이사들로서 구성되며 감사는 그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할 수는 없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시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 소집의 목적, 장소, 일시를 명기한 한국어 및 영어로 된 서면통고로 늦어도 이사회가 개최되기 21일전에 한국어에 거주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보나 등기우편으로 그외의 이사 또는 감사에게는 전보나 테렉스 그리고 추후에 등기우편으로 회장이 발송하여야 한다.

회장이 유고시 또는 회장이 통고를 발송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미리 지정된 이사가 통고를 발송한다. 이사회 소집에 대하여 전 이사 및 감사의 서면 동의(전보나 테렉스 포함)를 얻었을 경우 이사회는 상기와 같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개최할 수 있다.

제 38 조 (이사회 의 의장 및 결의의 채택)

1. 이사회 회장은 모든 이사회를 주재하며 회장의 유고시나 그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장, 부사장의 순으로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2. 상법이나 본 정관에서 다수 또는 소수의 성원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서 정족수가 충족된다.

이사회 의결이나 기타 조치가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받지 못하는 한 이사회 의결이나 기타 조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회장이나 어떤 이사회도 이사회에서 결재권을 갖지 못한다.

제 39 조 (의사록)

이사회 의의사록은 의사진행을 한국어와 영어로 기록하며 의사록에는 이사회 의의사진행요지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회장과 참석이사 및 감사는 의사록에는 성명을 기입 서명 날인한다. 의사록은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제 6 장 역 원

제 40 조 (종류 및 임명)

1. 회사의 역원은 사장, 부사장 및 기타 역원을 두고 수시로 이사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
2. 역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명한다.

제 41 조 (역원의 권한 및 직무)

1. 회사의 역원은 정관이 정한 바와 수시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2. 사장과 부사장은 회사의 최고 간부역원이며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감독하며 이사회나 주주가 채택한 모든 의결사항이 수행되었는가를 검사한다.
3. 회사 역원(이사회나 감사와는 구별됨)의 급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2 조 (이사 및 역원의 면책)

상법의 제 조건에 따라 업무 수행상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사 또는 역원이 단지 이사 또는 역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송사에 당사자가 되고 이에 비용, 경비, 손실 또는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들 이사 및 역원의 금액상의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 43 조 (회계년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되고 동년 12월 31일에 종결된다.

제 44 조 (회계체계)

1. 회사의 회계장부는 한국의 법과 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인 회계관례에 따라 기정되어야 한다.
2. 회사는 모든 장부 및 기록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회사의 자체 경비로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독립된 감사기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재무제표의 제출)

1. 대표이사 회장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전까지 하기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영업보고서
 -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2. 감사는 위 재무제표 등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 위 항 기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1 항의 재무제표 등은 위 2 항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주주 전원에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주주총회 일자 14일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46 조 (이익의 배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산정된 1회계연도 동안의 회사의 이익금은 하기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1. 법정적립금의 설정
2. 부채의 상환 및 지불
3. 전년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이익잉여의 할당
4. 이사회에서 정한 기타 적립금의 설정
5. 주주배당금의 지급

제 47 조 (배당금 지급)

1. 공표된 배당금은 회사의 회계연도 최종일 현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지급한다.
2. 배당금의 지급을 배당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요구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은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3.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제 8 장 부 록

제 48 조 (최초 회계연도)

회사의 최초 회계연도는 법인 설립일자에 개시되고 그 다음해 9월 30일에 종결된다.

제 49 조 (등록비용)

등록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등록비용에는 등록세, 방위세, 정관인증료 및 공증료를 포함한다.

제 50 조 (규 정)

회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규 및 규칙은 정관과 일치하도록 이사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 51 조 (상법의 적용)

정관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이나 상법 또는 기타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른다.